

의안번호	제 717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359회)

충청북도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 
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언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9월 29일

충청북도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 
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이언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9월 29일

발 의 자 : 이언구, 최광옥, 연철흙,  
박봉순, 박한범, 박우양,  
임병운

## 1. 개정이유

-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해 노근리 평화공원에 대한 충청북도의 사업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지원기준에 “「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항”을 포함 (안 제4조)
- 지원사업에 “노근리 평화공원의 추진사업”을 포함 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- 다. 입법예고 : 2017년 9월 20 ~ 9월 25일(5일간).

## 충청북도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6.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항

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노근리 평화공원의 추진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기준) (생략)</p> <p>1. (생략) (신설)</p> <p>2~3.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기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</u>」에 따른 사항</p> <p>3~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
<p>제5조(지원사업 등) ① (생략)</p> <p>1.~3. (생략) (신설)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5조(지원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노근리 평화공원의 추진사업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

제3조 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·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2.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
3.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
4.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5.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·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1호

### 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 
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# ○ 작성자

-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 행 준